
주 요 업 무 보 고

2025. 9. 5.

도 시 공 간 본 부

도시공간본부

①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

※ 참고자료 별도 제출

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

도시계획과장 : 이광구 ☎2133-8305 공항공역계획팀장 : 김형식 ☎8307 담당 : 백명선 ☎8308

공항고도제한관련 ICAO 국제기준 변경과 연계하여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공간 개선

□ 추진배경

- 국제민간항공기구(이하 ICAO)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'25.8.4. 발효되었고, '30.11.전면 시행 전 국내 공항별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
- ICAO 이사회 의결('25.4) → 개정안 발효(8.4) → 국내기준 마련(현재) → 시행('30.11)

개정 초안 마련	회원국 의견조회	이사회	개정안 발효	시행
2023.5. ▶ ICAO TF, 항행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개정 초안 마련	'23.6.9.~10.30. ▶ 우리나라 등 회원국(193개국) 의견조회 실시	'25.3.10.~4.4. ▶ 회원국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 통해 수정안 채택	2025.8.4. ▶ 과반수 이상 반대이견 미제출시 개정안 확정	2030.11. ▶ 각국 준비기간을 거쳐 '30.11월 전면시행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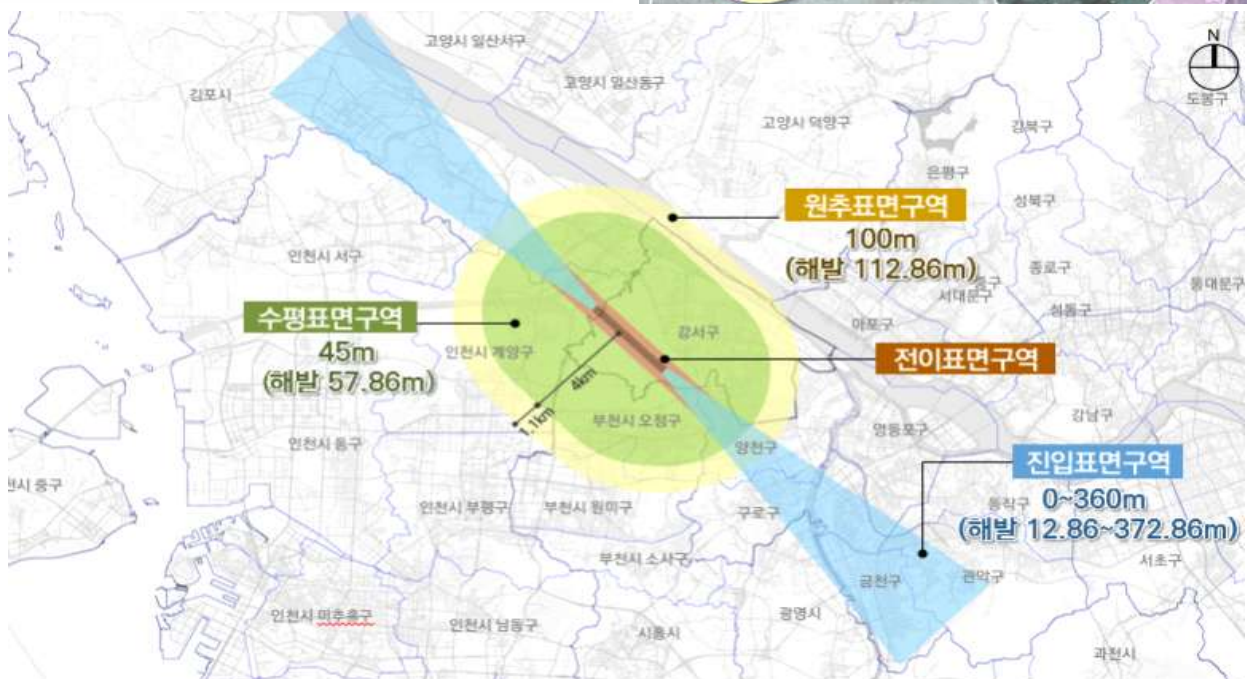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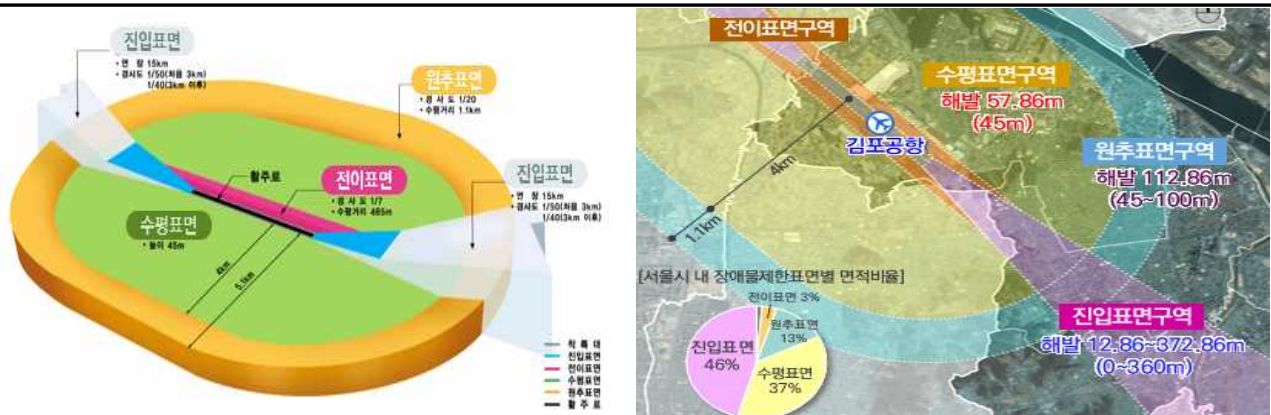
□ 추진경과

- '23. 9.17. : 서울시장-ICAO 의장(몬트리올) 면담
- '24. 3.~ :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 구성·운영 (총 4회 개최)
 - 구성 : 서울시, 강서구, 양천구, 계약구, 김포시, 부천시, 공항공사, 협회 등
- '25. 3.~4.4. : ICAO 이사회 개최 (장애물제한표면 개정안 채택)
- '25. 7. 16. : ICAO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(市 → 國)
 - 기존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평가표면(OES)의 적용범위 축소 및 고도제한 높이 완화 필요
- '25. 7. 24. : 관계기관 회의 개최 (국토부 공항운영과, 市도시계획과, 자치구)
 - 국토부는 국내기준 적용 시, 지자체 및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임
- '25. 8. 1. : 대통령-사·도지사 간담회(ICAO국제기준 국내적용 시 고도제한 완화요청)
 - 건의사항: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비행절차, 주변지형, 기존 비행금지구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 제한 등 규제적용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 반드시 필요
- '25. 8. 4. : ICAO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

□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 현황

- 근거법령 : 공항시설법 제34조 ※ 군 비행장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적용
-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¹⁾ 적용 지역 : 80.03km² (서울시 13.2%)

구분	면적 (㎡)	관리대상	규제내용
전이표면	3,097,000	활주로 및 이륙시 경사면	45m (해발 57.86m)
진입표면	33,204,000	이착륙시 비행기의 진입을 위해 설정	0~360m(3층~93층) 해발 12.50~372.86m 미만
수평표면	29,129,000	착륙시 지상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공중선회 구역	45m(14층 미만) 해발 57.86m 미만
원추표면	12,804,000	수평표면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안전이동을 위해 설정	45~100m (14층~28층) 해발 57.86~112.86m 미만



현국내 장애물제한표면

- 1)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(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·물 등을 말한다)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

□ ICAO 新공항고도제한 국제기준 주요내용

- 개정된 ICAO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에 비행절차 보호구역 (정부운영)등 항공기 항행 현황을 통합하여 작성됨
 - 고도제한은 위치에 따라 현재보다 범위가 축소 및 확대, 높이도 강화 및 완화됨
- ① (新국제기준) 現장애물 제한표면 ⇒ '금지표면'과 '평가표면'으로 이원화
 - 금지표면은 現제한표면보다 축소(184→35.2km²), 평가표면* 확대·신설(458km²)
 - * 평가표면의 경우 각 회원국의 공항여건 및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축소·조정 가능
- ② (항공학적 세부기준) 평가표면 고도제한 예외 적용을 위한 핵심 절차(준비 중)
 - 개정 초안 공개 ('25.下) → 체약국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→ 세부기준 공포 ('26.下)

□ 쟁점사항

- 개정된 ICAO 국제기준은 현재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표준 고도제한 높이가 강화되어 개정안의 국내 적용 시 **항공안전을 전제로 지역 실정 및 비행절차를 고려**한 조정 필요

□ ICAO 국제기준 효력

- 개정된 ICAO 국제기준은 각 체약국에서 자국 공항 특성에 맞게 자율 적용 가능한 권고사항이나, 공항별 적용 현황을 ICAO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(AIP)에 등록 필요
- 국제기준과 차이가 클 경우 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항공안전 상시평가(USOAP-CMA)에 불리
 - 항공안전 상시평가 실시사유: ICAO 회원국의 항공안전도를 다양한 위험지표로 활용되며, 낮은 등급 판정 시 노선취항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

□ 관계기관 동향

- (국토교통부)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국토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서울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임
- (강서구) 고도제한 완화(수평표면 45m→80m) 요청('24.9.), ICAO 방문('25.6.25.)
- (양천구) ICAO 개정안 강력 반대 구청장 성명 발표('25.7.15)

□ 서울시 입장

<국토부 건의사항>

- 항공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보다 평가표면 범위, 높이가 강화되지 않도록 고도제한 기준 설정
 - 항공운항 안전 확보 전제하에 장애물평가표면(OES) 합리적 설정
- 항공학적검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등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 제시

<TF운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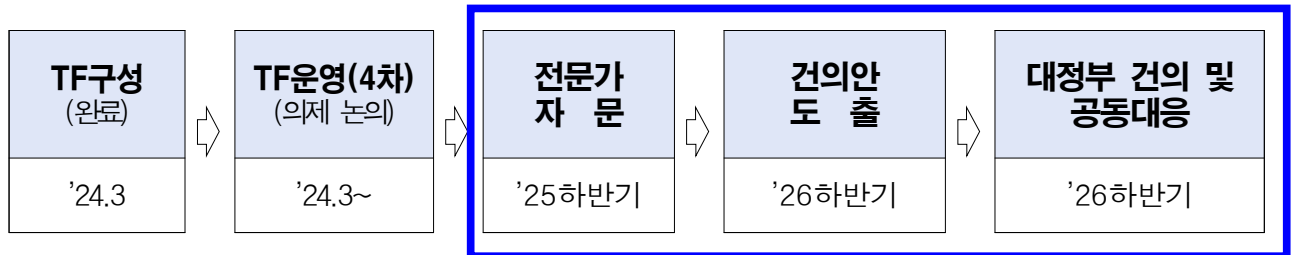
- ICAO 개정안의 국내 적용 시,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고 주민 부담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
-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합리적 기준(안)을 마련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,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조 중
 - TF구성 : 서울시, 강서구, 양천구, 계양구, 부천시, 김포시, 한국공항공사, 전문가(항공교통관제사협회, 민간항공조정사협회)

<관계기관 회의 개최>

- 일 시: 2025.7.24.(목) 10:00
- 참석자: 국토부 공항운영과, 서울시 도시계획과, 자치구(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)
- 주요내용: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-서울시-자치구가 공동 대응에 합의

□ 향후계획

-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 지속 운영 및 간담회 개최('24. 3~)
 -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의 관계지역 의견수렴 및 공동건의 등 정부 수용성 증대 도모
 - TF구성 자치구 등과 공동대응 (양천구, 강서구, 계양구, 부천시, 김포시)



※ 건의안은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이 확정('26.下)된 이후 최종 도출 예정이며, ICAO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의결 및 공포 전까지는 개정된 ICAO국제기준과 김포공항의 비행운항 절차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국내 적용(안)미련에 대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